

1. 개정이유

하청재해의 원청요율 반영과 사고사망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를 조정하고,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036호, 2021.4.13. 공포, 2022.1.1.시행)됨에 따라, 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,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 및 보험료 납부 등(안 제42조의2 신설)

-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에 대학·연구기관이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
- 대학·연구기관은 매 학기가 시작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학생연구자 명단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, 학기중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

나. 별지 서식 개정

-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에 따라 관련 서식 개정(별지 제18호, 별지 제18호의3, 별지 제18호의4, 별지 제18호의5, 별지 제18호의6 서식)
-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 서식 신설(별지 제55호의2, 별지 제55호의 3 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본문 중 “법 제15조제2항”을 “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
지의 규정”로 한다.

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2조의2(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·납부 등) ① 학생연구자에
대한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「연구실
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·연구기관 등
(이하 “대학·연구기관 등”이라 한다)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
한다.

② 대학·연구기관 등은 해당 학기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매 학기가 시
작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학생연구자 명
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대학·연구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2항에 따
른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
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변

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때 월의 중간에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일할계산한다.

1.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· 변경 · 중단 · 해약
2. 학생연구자의 학적 변동
3. 학생연구자의 질병 · 실종 · 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4. 학생연구자의 개인 사정

④ 공단은 대학 · 연구기관 등에 학생연구자 외의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해당 대학 · 연구기관 등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야 한다.

⑤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부과 · 징수,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,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의 예에 따른다.

별지 제18호서식, 별지 제18호의3서식, 별지 제18호의4서식, 별지 제18호의5서식, 별지 제18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55호의2서식과 별지 제5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에 관한 특례) 제4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

에도 불구하고 대학·연구기관 등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학생연구자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15일까지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재해예방활동 인정서

■ 신청자

사업장 관리번호		사업장명	
대 표 자 (생년월일)	(. .)	상시근로자수	
소 재 지 (전화번호)	(-)	☎ () -	

■ 인정확인 명세

재해예방활동	재해예방활동 인정일	산재보험료율 인하율	인정유효기간

귀 사업장은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였음을 인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○○지역본부(지도원)장

직인

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

■ 사업장 현황

사업장 관리번호		사업장명	
대 표 자 (생년월일)	(. .)	상시근로자수	
소 재 지 (전화번호)	(-)	☎ () -	

■ 인정취소 명세

재해예방활동	재해예방활동 인정 일	인정유효기간	인정 취소일	인정 취소 사유

귀 사업장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8항에 따른 인정 취소사유에 해당되어,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취소하였기에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고용노동부 ○○지방노동청(지청)장

직인

보내는 사람:	
받는 사람:	귀하
주소:	

()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
(산재예방요율)

사업장	사업장관리번호		
	상호·법인명		대표자
	소재지		

산재보험 성립일		산재보험 사업 종류	
예방인하율		산재보험료율	

귀 사업장은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5항에 따라 "산재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(산재예방요율)"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므로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귀 사업장의 ()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.

※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요율은 별도입니다.

년 월 일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)장

직인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	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	결재권자(직위/직급) 서명
협조자(직위/직급) 서명		
시행 처리과명-일련번호(시행일)		
우	/주소	/홈페이지주소
전화()	/팩스()	/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/공개구분

보내는 사람:	받는 사람:	귀하
	주소:	

()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
(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모두 적용)

사업장	사업장관리번호		
	상호·법인명		대표자
	소재지		

산재보험 성립일		산재보험 사업 종류	
보험수지율			
인하비율 조정기준		산재보험료율	
예방인하율			

귀 사업장은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"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(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)"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므로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귀 사업장의 ()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.

※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요율은 별도입니다.

년 월 일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)장 직인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 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 결재권자(직위/직급) 서명
협조자(직위/직급) 서명
시행 처리과명-일련번호(시행일)
우 /주소 /홈페이지주소
전화() /팩스() /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/공개구분

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(년 학기)

※ 하단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5일
------	-----	----------

사업장 관리번호

명칭	전자우편주소
소재지	우편번호
전화번호	팩스번호
사업자등록번호	법인등록번호

연번	성명	주민등록번호	학과명	학위과정 부호	휴대전화번호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
* 학위과정 부호: 1(박사과정, 석·박사통합과정), 2(석사과정, 학·석사통합과정), 3(전문학사·학사과정)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
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)장 귀하

작성방법

1. 학생연구자 명단은 해당 학기 학생연구자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작성합니다.
2. 학생연구자 명단은 휴학생·수료생 및 졸업 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되고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작성하며, 이러한 사람의 학위과정은 수료 또는 졸업 직전의 학위과정을 적습니다. 예를 들어, 석사과정 수료 후 대학 등에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석사과정으로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

※ 하단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5일
------	-----	----------

사업장 관리번호

명칭	전자우편주소
소재지	우편번호
전화번호	팩스번호
사업자등록번호	법인등록번호

연번	변경사유 부호	성명	주민등록번호	학과명	학위과정 부호	휴대전화번호	학생연구자 해당일/비해당일
1							
2							
3							
4							
5							

* 변경사유 부호: 1(학생연구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), 2(학생연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)

* 학위과정 부호: 1(박사과정, 석·박사통합과정), 2(석사과정, 학·석사통합과정), 3(전문학사·학사과정)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
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)장 귀하

작성방법1. 다음의 사유로 학생연구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되어 별지 제55호의3서식에 따라
제출된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된 경우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.

- ①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·변경·중단·해약, ② 학생연구자의 학적변동
- ③ 학생연구자의 질병·실종·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④ 학생연구자의 개인 사정

2. “변경사유 부호”는 학생연구자에 해당하거나 학생연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

3. “학위과정 부호” 작성 시 수료생 및 졸업 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되고 상위 학위과정의 첫학기 시작
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
해당 학생연구자의 학위과정은 수료 또는 졸업 직전의 학위과정을 적습니다. 예를 들어, 석사과정
수료 후 대학 등에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석사과정으로 적습니다.4. “학생연구자 해당일/비해당일”의 경우, 변경사유 부호를 “1”로 작성한 경우 학생연구자에 해당하게 된 날
을, “2”로 작성한 경우 학생연구자 개인 사정 등으로 학생연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을 작성합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개별실적요율의 결정)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(이하 “개 별실적요율”이라 한다)를 결정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 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 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. 다 만,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하여야 한 다.	제13조(개별실적요율의 결정) ① ----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 항까지의 규정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·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<u>제42조의2(학생연구자의 산재보 험료 신고·납부 등) ① 학생연 구자에 대한 보험료는 고용노동 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 액에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·연구기관 등(이하 “대학 ·연구기관 등”이라 한다)의 산 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</u> <u>② 대학·연구기관 등은 해당 학기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매</u>

학기가 시작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대학·연구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때 월의 중간에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일할계산한다.

1.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·변경·중단·해약
2. 학생연구자의 학적 변동
3. 학생연구자의 질병·실종·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4. 학생연구자의 개인 사정

④ 공단은 대학·연구기관 등에 학생연구자 외의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학생연구자에

	<u>대한 산재보험료를 해당 대학 · 연구기관 등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야 한다.</u> <u>⑤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부과 · 징수,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,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의 예에 따른다.</u>
--	---